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887

제출연월일: 2024. 11. 26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위탁 운영·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,해당 공사의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, 환경부장관,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각각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을비상임이사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법령・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'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이사회'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(안 제1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이사"를 "상임이사"로 한다.

- ① 공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1. 사장 1명
- 2. 상임이사 3명 이내
- 3. 비상임이사 4명
- 4. 감사 1명
- ③ 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, 서울특별시장,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고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이사"를 "상임이사"로 한다.

제15조의2제2항 중 "이사"를 "상임이사"로 한다.

제17조 중 "임원"을 "임원(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사장을 포함한 이사"를 "사장,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

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임원) ① 공사에 임원으로	제12조(임원) ① 공사에는 다음
<u>사장 1명, 이사 3명 이내 및 감</u>	각 호의 임원을 둔다.
<u>사 1명을 둔다.</u>	<u>1. 사장 1명</u>
	<u>2. 상임이사 3명 이내</u>
	<u>3. 비상임이사 4명</u>
	<u>4. 감사 1명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	③ 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의 승
받아 사장이 임면한다.	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하고, 비
	<u>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, 서울특</u>
	별시장,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
	도지사가 그 소속 3급 이상 공
	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
	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
	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.
④ 사장의 임기는 3년, <u>이사</u> 와	④ <u>상임이</u>
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	<u>사</u>
각각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	
있다. 이 경우 임면권자는 제13	
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실적을	
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	
다.	.
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 (생 략)	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
	같음)

- ② <u>이사</u>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,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(생략)
- 제15조의2(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) ① (생 략)
 - ② 공사의 사장 및 감사가 환경 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사의 <u>이사</u> 및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 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- 제17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공사의 <u>임원</u>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8조(이사회) ① (생 략)

- ② 이사회는 <u>사장을 포함한 이</u> 사로 구성한다.
- ③ ④ (생 략)

② <u>상임이사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의2(임직원의 겸직 제한
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상임이사</u>
제17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
<u></u>
제외한다)
<u>.</u>
제18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사장, 상임이사 및</u>
비상임이사
③・④ (현행과 같음)